

제 1477 호  
1990. 3. 10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고 건수  
편집인: 공보관 유현수  
전화: 731-6111~3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출판실  
전화: 735-3337

# 시 보

## 차 례

◎ 공문시행  
제 1 회 시민장안심사결과때론불응지시 ..... 3

◎ 조 례  
제2592호 서울특별시사용료·수수료통합징수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 ..... 7  
제2593호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 ..... 7  
제2594호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 ..... 10

◎ 교육훈령  
제 120 호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학칙개정학칙 ..... 10

(이면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1231

● 삼수도사업본부훈령		
제 2 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역안집행심의계획규정	.....	10
● 교육조례		
제2591호 서울특별시립차교입적조례증개정조례	.....	12
● 교육규칙		
제 349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그소속기관에두는지방공무원의정원에 관한규칙증개정규칙	.....	13
● 고 시		
제 60 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	.....	21
제 62 호 서울특별시식품점영업소영업시간제한고시	.....	22
● 구 고 시		
제 3 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시행허가	.....	23
제 3 호 민영주택건설사업제획변경승인	.....	23
제 4 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시행변경허가	.....	23
제 5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	24
제 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	24
제 8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	25
제 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	25
제 1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	26
제 1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	26
제 2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	26
제 22 호 민영주택건설사업제획승인고시	.....	27
제 51 호 민영주택건설사업제획승인고시	.....	27
제 119 호 민영주택부기과열지구지정	.....	28
● 구 공 고		
제 15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완료공고	.....	28
제 17 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	28
제 18 호 도시계획공고	.....	28
제 1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공고	.....	29
제 23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공고	.....	29
제 24 호 원인재교부	.....	30
제 24 호 주택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	31
제 35 호 도시계획사업(공원)실시계획공고	.....	31
제 112 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조치	.....	32
● 사업소공고		
제 3 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פק기	.....	32
● 사 령		

## 공 문 시 행

서울특별시

시경 01224-44 (731-6553) 1990. 3. 7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제1회 시민청안 활용지시  
 1. 별첨 시민청안은 심사결과 시경에 활용키로 결정되었으니 적극 활용토록하고 시행상의 미비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건의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첨부 제1회 시민청안 심사결과 1부

서울특별시 장

수신처: 서파1-69

[채택 장안내용]

채택등급	제 목	비 고
동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을 위한 무료 디스크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하여 실내체육관, 구민회관등을 이용 주 1회정도 정기적으로 무료 디스크장을 설치 활용토록 하여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 및 탈선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함.</li> <li>- 제안자: 강동구 둔촌1동 주공아파트 306동 607호 이 제 롱</li> </ul> </li> </ul>	시장표창 및 시상금 50만원
동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철 신도림역 주변 정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인도로 도림천교부터 신도림역 철도면까지의 도림천 일부를 복개하여 신도림역 및 경인도로 이용자를 위한 광장용지로 확보하고, 신도림역 통로와 도림천 사이에 있는 공장을 이전시켜 여객통로 증설 및 역광장용지로 활용</li> <li>- 제안자: 구로구 고척동 246-5 박 광 원</li> </ul> </li> </ul>	시장표창 및 시상금 50만원
동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친목단체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친목단체를 자율적으로 동사무소에 등록토록하여 불우이웃돕기, 수재민 구호등 긴급구호 사업시 참여할수 있도록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상부상조하는 건전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활용</li> <li>- 제안자: 강동구 명일동 62 박 인 식</li> </ul> </li> </ul>	시장표창 및 시상금 50만원

제책등급	제 목	비 고
장려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철 역명 발기안</li> <li>-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동서울 터미널과 인접하고 있는 강변역을 강변역(동서울터미널)으로 명칭을 변경토록 하여 지하철 이용시민의 불편사항 해소</li> <li>- 제안자: 노원구 상계8동 주공아파트 1508동 609호 박 재 성</li> </ul>	시상표창 및 시상금 10만원
장려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도시개발 계획에 따른 연구</li> <li>- 신도시 개발계획을 인구 수용계획의 150%를 적용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체계적인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신도시 개발계획의 잦은 변경을 방지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li> <li>- 제안자: 노원구 상계동 765 주공아파트 107동 102호 우 수 원</li> </ul>	시상표창 및 시상금 10만원
장려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영세민 임대아파트 선정기준 개선</li> <li>-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을 현실에 맞도록 소득폭을 확대하거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인하하여 실질적인 저소득층보</li> <li>- 제안자: 노원구 월계2동 508-30 김 영 수</li> </ul>	시장표창 및 시상금 10만원
장려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각점 및 도근점 관리방안</li> <li>- 지적 기초점인 삼각점 및 도근점의 표시판을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여 공사시 훼손을 방지하고 수시 순찰을 강화</li> <li>- 제안자: 강서구 공항동 19 - 26 이 의 만</li> </ul>	시장표창 및 시상금 10만원
장려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철 역사 캐노피 에너지 절감방안</li> <li>-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캐노피(차인폴)의 투명 아크릴판 1면에 유백색 실크인쇄를 하여 조도를 향상시켜 수은램프 200W를 수은램프 100W 또는 형광램프 20W로 교체하여 전력요금을 절감하고 보수를 위한 DOOR를 설치</li> <li>- 제안자: 양천구 목6동 911 목동아파트 614동 1906호 김 영 광</li> </ul>	시장표창 및 시상금 10만원
장려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적재용 쓰레기 컨테이너 박스 양측에 야광표시를 하여 식별이 용이토록하고, 도심지 지하보도 청소용 산업용 진공 흡입식 청소기를 활용하여 청소할 수 있도록하여 주민 불편해소</li> <li>- 제안자: 서초구 서초1동 극동아파트 6동 406호 구 성 완</li> </ul>	시장표창 및 시상금 10만원

제 목	비 고
<p>노 령 상</p> <p>○ 임시도로 점용허가 사용료 정수 개선</p> <p>- 임시도로점용 허가사 양초 점용료의 2-3배의 금액을 대 치토록 하거나 준공검사시 도로점용료 체납 여부를 확인 후 준공 검사할 수 있도록하여 추가점용료 체납 방지</p> <p>- 제안자: 은평구 갈현동 285-250 강 석 용</p>	<p>시장표창 및 기념품 수여</p>
<p>노 령 상</p> <p>○ 도심지 학교운동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활용</p> <p>-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운동장을 유료 주차장으로 활 용하고 장기적으로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 차장난을 해소하고 수입금을 교육계정으로 활용</p> <p>- 제안자: 서초구 양계동 337-15 이 성 호</p>	<p>시장표창 및 기념품 수여</p>
<p>노 령 상</p> <p>○ 서울시 종합정보지 발간</p> <p>- 시민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질수 있는 내용과 중요 시정을 소 개할 수 있는 종합정보지를 월간으로 발행 시민들에게 배포</p> <p>- 제안자: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303동 1504호 박 기 봉</p>	<p>시장표창 및 기념품 수여</p>
<p>노 령 상</p> <p>○ 시내버스 경류장 개선방안</p> <p>- 시내버스 경류장을 노선별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정하 여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번호의 색상을 방향에 따 라 다르게 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선</p> <p>- 제안자: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4동 1103호 김 병 각</p>	<p>시장표창 및 기념품 수여</p>
<p>노 령 상</p> <p>○ 수도계량기 점검방법 개선</p> <p>- 매월 실시되는 반상회등을 통하여 계량기 점검일을 홍보 하여 가구주가 수도계량기를 점검하여 대문밖에 붙여 두 도록하여 옥외에서 점검이 가능하도록 함</p> <p>- 제안자: 은평구 역촌1동 15-15 황 기 순</p>	<p>시장표창 및 기념품 수여</p>
<p>노 령 상</p> <p>○ 주방용 L.P.G가스 용기에 용량측정기기 부착</p> <p>- 가스용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L.P.G가스 용기에 용량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여 잔량 확인등의 사용자 불편사항 해소</p> <p>- 제안자: 동작구 상도2동 363-159 저 육 순</p>	<p>시장표창 및 기념품 수여</p>

제책등급	제 목	비 고
노 령 상	○ 쓰레기처리 공해방지용 인공 꽃동산 점 공원묘지로 활용 - 흙이 침투되지 않는 용지를 확보하여 쓰레기와 이근 야산의 흙을 교차로 쌓아올려 매립이 완료되면 5m 정도를 복토하여 수목과 화초를 심어 꽃동산을 만들고 공간은 공원묘지로 활용 - 제안자: 양천구 신정동 973-35 이 명 훈	시장표창 및 기념품 수여
노 령 상	○ 주·경차 차량에 대한 전화번호 표시제 운영 - 주·경차 차량에 대하여 운전자(또는 소유자)가 앞·옆면 또는 식별이 쉬운 공간등에 연락처(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함 - 제안자: 관악구 봉천10동 463-3 박 순 조	시장표창 및 기념품 수여
노 령 상	○ 시립병원 수가관리사제도 신설 - 현재 시립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중 1명을 수가관리사로 뽑아 원수부에 고정배치하여 입원 환자가 퇴원시에 정확한 의료수가를 계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제안자: 강남구 일원동 681-15 홍 마 해	시장표창 및 기념품 수여
노 령 상	○ 경원선과 접속되는 전철역에서의 경원선 통과시간 안내 - 경원선과 접속되는 전철역에서 전동차가 진입하기 직전에 경원선 통과시간을 차내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제안자: 동대문구 휘경1동 191-4 김 두 한	시장표창 및 기념품 수여
노 령 상	○ 여의도 셋강에 역세권 대형 주차장 건설 - 여의도 셋강을 홍수시에는 현행처럼 수로로 활용하고 평시에는 주차장으로 개발하여 전철역과 연결할 수 있는 수송수단을 건설 운영토록 함 - 제안자: 송파구 잠실동 19 주공아파트 16동 101호 노 경 한	시장표창 및 기념품 수여
노 령 상	○ 한강상 부유물 제거기 설치 및 저수မ် 폭균열 방지방안 - 한강 강변에 그물망을 설치 부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저수မ်의 폭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티로폼 덩어리를 댐 주위에 설치 - 제안자: 구로구 구로1동 685-243 주공아파트 114동 906호 하 태 선	시장표창 및 기념품 수여

조 례

◎서울특별시조례제2592호

서울특별시사용료·수수료통합집수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사용료·수수료통합집수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통합공과금과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하수도사용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폐기물수집수수료, 벨레비전방송수수료(이하 "통합공과금"이라 한다)의 효율적 과징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통합공과금과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및 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범위) 사업의 업무범위는 한국전력공사·한국방송공사·도시가스회사등과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통합공과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검침·실사·조정·민원처리·고지서의 발부 및 통합공과금 수납 등에 한한다.

제3조(관리자)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관리자는 재무국장으로서 한다.

제4조(특별재산) 특별회계는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조(일시 차입금) ①특별회계의 예산범위안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 특별회계의 수입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한국전력공사·한국방송공사 및 도시·가스회사의 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8조(지출) 특별회계의 지출은 통합공과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인건비·전산처리비·관리비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9조(예비비) 특별회계 예산에 예비비를 지상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및 다른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제2593호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 대한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28조의"를 "제127조의"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야간사용시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야간: 18:00-23:00까지

제6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중 "60원"을 "100원"으로, "40원"을 "50원"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기선전용사용료(평일주간기준) (단위: 원)				
운 동 장 별		제 육 경 기	제 육 이 의 행 사	
종합 운동 장	실 내 제 육 관		43,400	285,000
	실 내	09:00-18:00	510,400	1,020,800
		09:00-12:00	169,400	338,800
	수영장	12:00-18:00	431,200	862,400
	야 구 장		88,000	330,000
	올림피구경기장		181,500	726,000
장	총 제 육 관		28,600	143,000
서울 운동 장	육 상 장	60,500	198,000	
	야 구 장	33,000	198,000	
	배 구 장	8,800	44,000	
	정 구 장	8,800	68,200	
	수영 역 도 장	71,500	77,000	
효창 운동 장	축 구 장		26,400	154,000
	정 구 장	면당 4,400원 기준		
		(A - 1 코트)	22,000	49,500
		(A - 2 코트)	17,600	44,000
		(A - 3 코트)	17,600	44,000
(B - 1 코트)	8,800	26,400		
목동 종합 운동 장	주 경 기 장		60,500	198,000
	야 구 장		88,000	330,000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일·공휴일은 평일의 3할 가산, 야간사용은 해당 주간사용료에 3할을 가산함.</li> <li>○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할, 야간은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하고,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봄.</li> <li>○ 종합운동장내 실내수영장의 동결기(11월~다음해 4월까지)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할을 가산하고, 다이빙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3할을 가산함.</li> <li>○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의 보조경기장 사용료는 1실당 실내체육관 기본사용료의 2.5할을 정수함.</li> </ul>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보조경기장 사용료는 주경기장 기본사용료의 3할을 정수함.</li> <li>○ 종합운동장내 체육관은 실내체육관 기본사용료의 2.5할, 보조수영장은 실내수영장의 3할을 정수함.</li> </ul>			



[별표2]			
개인 연습 사용료 (평일 2시간기준)			
운	동	장	비
종	합	금	고
	실내체육관	2,640	월 회원은 트레이닝센터 사용무로
종	실내수영장(대인)	1,300	
	(소인)	900	
운	야구장	2,640	
	주경기장	2,640	
동	주경기장트랙	200	
	트레이닝센터	600	
장	총 체육관	1,320	
서	육상장	100	
	축구장	1,320	
울	야구장	1,320	
	씨름장	1,320	
운	경구장(1면당)	1,960	
	탁구장(1대당)	600	
동	수영장	250	
	역도장	320	
	트레이닝센터	280	
효	축구장	690	
	육상장	100	
	경구장(1면당)	1,960	
목	축구장	2,640	동
	육상장	200	
종	야구장	2,640	
합			
운동장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인 (13세이하)의 연습사용료는 해당기본료의 5할을 정수함. (다만, 수영장을 제외한다.)</li> <li>○ 단체는 동일 소속팀 10인 이상으로 하고 기본료의 7할을 정수함.</li> <li>○ 월 회원 사용료 발행시는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정수함.</li> <li>○ 토·일·공휴일은 평일의 3할 (골프장은 5할)을 가산함.</li> </ul>		
고			

●서울특별시조례제2594호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  
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9. 서울특별시립 상계직업훈련원
  - 가. 14세이상 24세이하의 저소득층 청  
소년에 대한 직업훈련사업
  - 나. 훈련원생의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육훈령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훈령제120호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학칙중개정학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학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②항중 “간사는 교학과장으로 보하  
며 위원은 5인 내지 10인 이내의 관리직  
공무원 또는 학계의 저명인사로 구성한다”  
를 “간사는 기획과장으로 보하며 위원은  
10인 내지 15인 이내의 관리직 공무원,  
학계, 언론계, 유관교육기관, 사회단체 및  
시민대표등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24조 ②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수부장이 되고 위  
원은 각 소위원회별로 5인 내지 10인 이  
내의 관리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1. 교재편찬심의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획과장, 간사는 연구발전계장으로

- 한다.
- 2. 교과목 심의 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획과장, 간사는 기획계장으로 한다.
- 3. 강사 위촉 심의 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교학과장, 간사는 교무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상수도사업본부훈령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훈령제2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 제118  
조 및 동시행행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예산집행심의  
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및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경영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부장,  
업무부장, 생산관리부장, 급수부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통리하며 심의회를 대  
표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예산과장이 되고, 심의회의 사  
무를 담당한다.

제3조(심의사항)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 1.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사전 검토
- 2.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  
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p>3. 사업규모의 변경, 설계변경 및 예산의 이월, 이유, 전용 및 변경잔액의 사용,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p> <p>4. 보조금 및 출연금, 전출금등의 보부판 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5.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못하는 사항</p> <p>6. 기타본부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②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p> <p>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업정경비 기타 경상사업비등) 다만, 경상사업비중 집행금액은 적더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제4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 및 사업변경의 필요성, 적법성 및 타당성</p> <p>2. 예산의 집행시기, 집행방법과 예산의 등불적, 효율적 운용의 적정여부</p> <p>3. 집행결산 심사분석 결과등 예산집행후의 효과</p> <p>4. 기타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관련된 사항</p> <p>제5조(회의 및 의사)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분기마다 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p> <p>②심의회의 의사는 4인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p>	<p>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6조(심의요청등) ①관계부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 안전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위원장이 제1항의 심의안전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p> <p>③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관계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7조(제심의) 관계부장이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안에 제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심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제심을 요청할 수 없다.</p> <p>제8조(심의결과)위원회의 심의에 부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p> <p>제9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부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관계부장은 해당 심의안전중 심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p> <p>1. 개최, 폐회, 일시 및 장소</p> <p>2. 출석위원 성명</p> <p>3. 심의사항</p> <p>4. 심의결과</p> <p>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 제 안 요 구 서

의결주문(간략하게)

제안이유(구체적으로기술)

첨부서류: 별첨

19 년 월 일  
제출자 부장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예산집행심의위원회장 귀하

(별지)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안 건
심의년월일	19 년 월 일	

회계및과목	회계명	과 목		
		(관)	(항)	(세항)
사 업 명				
변경내용				

제 출 자	부장
제출년월일	년 월 일

38-12

제147호 시

보 1990. 3. 10

**교육조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3. 1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준

●서울특별시조례제2591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국민학교(강동)중 "서울가톨릭국민학교"를 "서울가동국민학교"로 하고, (별표2)의 중학교(동부)중 "연복여자중학교"를 "장평중학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그소속기관에두는지방공무원정원표  
지 방 공 무 원 정 원 총 결 표

**교육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그소속기관에두는 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3. 1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준

●서울특별시교육규칙제349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그소속기관에두는 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그소속기관에두는 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그소속기관에 두는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총 계	7,259
별정직계	10
비상계획관 (5급상당)	1
학생수련전담 (5급상당)	2
속 기 사 (6급상당)	1
예비군중대장 (6급상당)	1
학생수련전담 (6급상당)	2
전산처리사 (7급상당)	-
사 전 사 (7급상당)	1
학생수련전담 (8급상당)	2
전산처리사 (8급상당)	-
3급내지9급계	2,152
지방부이사관	1

지방의무부기감	1
지방서기관	16
지방의무기정	8
지방행정사무관	121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1
지방사서관	28
지방의무기과	7
지방보건기과	2
지방전기기과	1
지방토목기과	1
지방건축기과	4
지방행정주사	656
지방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2
지방사서	58
지방전산처리사	1
지방건축기사	23
지방전기기사	5
지방기계기사	6
지방토목기사	8
지방약무기사	2
지방간호기사	5
지방보건기사	21
지방행정주사보	442
지방사서보	100
지방전산처리사보	7
지방건축기사보	14
지방기계기사보	8
지방전기기사보	14
지방토목기사보	5
지방간호기사보	4
지방보건기사보	94
지방행정서기	324
지방사서서기	91
지방전산처리원	14
지방건축기원	6
지방토목기원	1
지방전기기원	2
지방기계기원	.

지방보건기원	3
지방보건기원보	1
지방행정서기보	10
지방사서서기보	34
지방전기기술보	-
<b>기 능 직</b>	<b>5,097</b>
지방통신장(6등급)	1
지방전기장(6등급)	4
지방기계장(6등급)	12
지방기계장(7등급)	44
지방전기장(7등급)	11
지방통신장(7등급)	7
지방기계원(8등급)	-
지방전기원(8등급)	-
지방기계원(9등급)	-
지방조무원(9등급)	-
지방통신원(10등급)	3
지방전기원(10등급)	39
지방기계원(10등급)	73
지방원전원(10등급)	509
지방교환원(10등급)	18
지방농림원(10등급)	13
지방보건원(10등급)	12
지방간호조무원(10등급)	4
지방사무보조원(10등급)	3,029
지방방호원(10등급)	1,318
<b>교 용 직</b>	<b>-</b>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군	
○ 교육위원회(본청) 지방공무원 정원	
<b>총 계</b>	<b>298</b>
<b>별정직계</b>	<b>8</b>
비상계획관(5급상당)	1
속기사(6급상당)	1
예비군중대장(6급상당)	1
학생수련전담(6급상당)	2
사진사(7급상당)	1
학생수련전담(8급상당)	2

5급내지9급계	177
지방행정사무관	25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지방보건기과	1
지방전기기과	1
지방건축기과	3
지방토목기과	1
지방행정주사	44
지방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
지방전산처리사	1
지방토목기사	3
지방건축기사	8
지방전기기사	1
지방기계기사	2
지방보건기사	2
지방행정주사보	29
지방사서보	1
지방전산처리사보	3
지방건축기사보	5
지방전기기사보	2
지방기계기사보	2
지방토목기사보	1
지방간호기사보	1
지방보건기사보	4
지방행정서기	22
지방사서서기	1
지방전산처리원	4
지방토목기원	1
지방건축기원	4
지방전기기원	2
지방보건기원	-
<b>기 능 직</b>	<b>113</b>
지방기계장(7등급)	-
지방전기장(7등급)	-
지방운전원(10등급)	20
지방교환원(10등급)	4
지방농림원(10등급)	1



지방사무보조원(10등급)	77
지방방호원(10등급)	11
○직속기관 지방공무원 정원	
총 계	1,311
별정직계	2
학생수련전담(5급상당)	2
3급내저9급계	496
지방부이사관	1
지방의무부기관	1
지방서기관	16
지방의무기정	8
지방행정사무관	27
지방사서관	28
지방의무기록	7
지방보건기록	1
지방행정주사	28
지방사서	58
지방약무기사	2
지방간호기사	5
지방보건기사	10
지방전기기사	-
지방기계기사	1
지방행정주사보	26
지방사서보	99
지방전산처리사보	2
지방간호기사보	3
지방보건기사보	13
지방기계기사보	-
지방전기기사보	2
지방행정서기	29
지방사서서기	90
지방전산처리원	1
지방보건기원	3
지방행정서기보	-
지방사서서기보	34
지방보건기원보	1

기 능 직	813
지방기계장(6등급)	6
지방전기장(6등급)	3
지방통신장(6등급)	1
지방기계장(7등급)	18
지방전기장(7등급)	6
지방통신장(7등급)	7
지방기계원(8등급)	-
지방통신원(8등급)	-
지방기계원(9등급)	-
지방통신원(10등급)	3
지방전기원(10등급)	11
지방기계원(10등급)	22
지방유전원(10등급)	37
지방교환원(10등급)	2
지방농림원(10등급)	2
지방보건원(10등급)	8
지방간호조무원(10등급)	4
지방사무보조원(10등급)	555
지방방호원(10등급)	128
○ 고등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총 계	735
별정직계	-
전산처리사(7급상당)	-
전산처리사(8급상당)	-
5급내지9급계	206
지방행정사무관	60
지방행정주사	62
지방행정주사보	47
지방전산처리사보	1
지방보건기사보	3
지방전기기사보	5
지방행정서기	28
기 능 직	529
지방기계장(6등급)	5
지방전기장(6등급)	1

지방기계장(7등급)	16
지방전기장(7등급)	6
지방전기원(10등급)	24
지방기체원(10등급)	45
지방운전원(10등급)	4
지방교원원(10등급)	12
지방농림원(10등급)	4
지방사무보조원(10등급)	343
지방방호원(10등급)	69
교 용 직	-
○ 서울직업학교 및 아현 직업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총 계	23
6급내지9급계	2
지방행정주사	2
기 능 직	21
지방기계원(10등급)	6
지방전기원(10등급)	1
지방운전원(10등급)	2
지방사무보조원(10등급)	10
지방방호원(10등급)	2
교 용 직	-
○ 서울정진학교(복수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총 계	23
6급내지9급계	3
지방행정주사	1
지방보전기사보	1
지방행정서기	1
기 능 직	20
지방기계장(7등급)	1
지방전기장(7등급)	1
지방운전원(10등급)	3
지방보전원(10등급)	4
지방사무보조원(10등급)	10
지방방호원(10등급)	1

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교육구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 교육구청 지방공무원 정원	
총 계	585
별정직계	-
전산처리사(7급상당)	-
5급내저9급제	349
지방행정사무관	9
지방건축기과	1
지방행정주사	85
지방건축기사	15
지방전기기사	4
지방기계기사	3
지방토목기사	5
지방보건기사	9
지방행정주사보	100
지방전산처리사보	1
지방기계기사보	6
지방건축기사보	9
지방전기기사보	5
지방보관기사보	9
지방토목기사보	4
지방행정서기	54
지방전산처리원	9
지방건축기원	2
지방기계기원	-
지방행정서기보	10
지방전기기원보	-
기 능 직	246
지방기계장(7등급)	5
지방전기장(7등급)	1
지방운전원(10등급)	27
지방농림원(10등급)	1
지방사무보조원(10등급)	194
지방방호원(10등급)	18
○ 중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총 계	1,044

6급내지9급계	416
지방행정주사	206
지방행정주사보	125
지방행정서기	85
지방행정서기보	-
기 능 직	628
지방기계장(6등급)	1
지방기계장(7등급)	2
지방농림원(10등급)	5
지방사무보조원(10등급)	413
지방방호원(10등급)	207
○ 국민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총 계	3,230
6급내지9급계	503
지방행정주사	228
지방행정주사보	106
지방보건의사보	64
지방행정서기	105
기 능 직	2,727
지방기계장(7등급)	2
지방운전원(10등급)	416
지방사무보조원(10등급)	1,427
지방방호원(10등급)	882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00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

건설부 고시 제131호('76. 8. 21)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영동아파트 4지구(청담, 도곡지구)에 대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리 일반인은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1990. 3.

서울특별시장

- 지구개발 기본계획의 명칭 : 서울특별시 영동아파트 4지구(청담, 도곡지구) 개발 기본계획
- 지구개발 대상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일부 및 도곡동일대 (923,416㎡)
- 지구개발 계획의 변경개요
  - 영동아파트 4지구(청담, 도곡지구)기본 계획 변경내역 : 별첨
- 공람장소 및 방법
  - 공람장소 : 주택국 주택기획과, 강남구청 주택과
  - 공람방법 : 개별방문 열람

영동아파트 4지구(정답, 도곡) 기본계획 변경내역

○ 건축규제의 계획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가. 용도규제 계획	생 락	현행과 같음
나. 건폐율규제 계획		
연립주택	30%이하	40%이하
저층아파트	25%이하	30%이하
고층아파트	20%이하	25%이하
기타 건축물	50%이하	50%이하
다. 건축물 높이의 규제계획		
연립주택	3층이하	3층이하
저층아파트	4-5층이하	5층이하
고층아파트	15층이하	6층이상
기타건축물	5층이하	5층이하
라. 세대밀도규제 계획 (세대수/가구면적 10,000㎡)		
연립주택	40-80	60-150
저층아파트	80-200	120-130
고층아파트	150-300	200-450
마. 일조권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규제계획	생 락	삭 제
바. 녹지조성계획	생 락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고시제62호

서울특별시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제한고시

식품위생법제30조, 같은법 시행령제53조1항, 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식품접객업소(대중음식점, 관광호텔내 유흥접객업)의 영업시간 제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990. 3. 10

서울특별시장 고 건

1. 서울특별시 식품접객업소 (대중음식점,

관광호텔내 유흥접객업) 영업시간 제한 내역

업 종	영업시간 제 한	종 전	비 고
대 중 음 식 점	24:00- 04:00	24:00- 05:00	1시간 연 장
유 흥 접 객 업 (관광호텔내)	02:00- 17:00	04:00- 17:00	2시간 단 축

\* 관광호텔내 및 역사내 대중음식점은 변동 없음 (시간제한없음)

2. 시행일자: 이 고시는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구 고 시**

●강동구고시제3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시행허가

1. 강동구 고시 제3호('90. 3. 5)로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시행허가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62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시행허가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0. 3. 5

강 동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강동구 상일동 산62번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3차: 도시계획사업  
(명일근린공원부조 조성공사)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독서실 및 노인회관: 1,000㎡  
(건물연면적 1,200㎡)
  - 정 구 장: 1,500㎡(건물연면적 80㎡)
  - 매 점: 300㎡(건물연면적 200㎡)
  - 공중변소: 66㎡(건물연면적 66㎡)

나. 면적 및 규모

주택종별	규 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	동	세 대			
아 파 트	5	2	90	5,888.1	1,713.2	10,090.9

다. 변경사항

- 1) 주차장, 우수정화조 구조물변경
- 2) 사업기간 당초: '89. 5. 26-'90. 2. 28  
변경: '89. 5. 26-'90. 7. 30

●강동구고시제4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시행변경허가

1. 강동구고시 제 호('90. 3)로 도시계획

- 도 토: 171.9㎡
- 광 장: 3,100㎡
- 장식파단: 660㎡
- 녹 지: 7,687.1㎡

- 라. 사업시행자주소성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목동 171-27 남상교
- 마. 사업시행기간: 1990. 3 - 1991. 4. 30

●동작구고시제3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 2.

동 작 구 청 장

1. 사업명: 민영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국방부연합 직장주택조합장  
양 재 옥  
순천향 대학병원 직장주택조합장  
김 형 철
3. 사업시행지 및 면적규모  
가.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산 81-2의 5필지

사업(공원조성) 시행변경허가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 41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시행 변경 허가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0. 3.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강동구 상일동 산 4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명일근린공원 부분조성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당초 : 소운동장 7,000㎡, 도로 1,020㎡,  
녹지 5,612㎡

○변경 : 소운동장 2개소 5,628㎡, 사적장  
792㎡, 씨름장 580㎡, 어린이놀이터  
465㎡, 녹지 4,887㎡, 도로 1,280㎡

라. 사업 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66번지  
학교법인 한영학원 이사장 최 노 애

마. 사업 시행기간

○당초 : '89. 3. 20 - '89. 12. 30

○변경 : '89. 3. 20 - '90. 12. 30

●은평구고시제5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353호('89. 7. 21)로  
시설결정되고 (서울)은평구 고시 제16호('89.  
7. 28)로 지적승인된 대조동 68-89간 도  
로확장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을 실시  
코자 (서울)은평구 공고 제209호('89.11. 7)  
로 공람공고 완료하고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2413호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 고시  
제33호('89.11.23)로 실시계획인가된 고시  
사항중 관계인을 추가하여 별첨 고시(안)  
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2. 3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은평구 대조동 89의 213-  
69의 4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대조동 68-89간 도로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로확장  
B=3m→6m, L=330m, A=19.8a

라. 사업의 시행자 : 은평구청장

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90. 12. 31

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 첨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별 첨

아. 변경내용 : 관계인 추가 (3건)

●은평구고시제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396호('89. 8. 24)로  
시설결정되고 (서울)은평구 고시 제20호  
( '89. 9. 7)로 지적승인된 구과발역세권 주  
차장 조성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주차  
장)을 실시코자 (서울)은평구 공고 제176호  
( '89. 10. 4)로 공람공고 완료하고 도시계  
획법 제25조 및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2413호의 규정에 의거 은  
평구 고시 제23호('89. 10. 2)로 실시계획인  
가된 고시사항을 관계인 추가하여 별첨 고  
시(안)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2. 13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구과발 역세권 주차장 조  
성공사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다. 사업의 규모: 주차장 A=4,977㎡  
 라. 사업의 시행자: 은평구청장  
 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로부터 '90. 12월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조서: 별첨  
 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별첨  
 아. 변경내용: 관계인 및 지장물 추가

◎은평구고시제8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396호('89. 8.24)로 시설 결정되고 (서울)은평구 고시 제20호('89. 9.7)로 지적승인된 용암동 601의 69-601의 6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을 실시코자 (서울)은평구 공고제175호('89. 9.29)로 공람공고 완료하고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2413호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 고시 제35호('89. 10.26)로 실시계획인가된 고시사항중 관계인을 추가하여 별첨 고시(안)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2. 13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은평구 용암동 601의 69-용암동 601의 6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 용암동 601의69-601의6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도로개설 B=4m, L=80m  
 라. 사업의 시행자: 은평구청장  
 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90. 12. 31  
 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별첨  
 아. 변경내용: 관계인 추가 (3건)

◎은평구고시제9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353호('89. 7. 21)로 시설결정되고 (서울)은평구 고시 제16호('89. 7. 28)로 지적승인된 용암동 450-220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을 실시코자 (서울)은평구 공고 제201호('89. 11. 7)로 공람공고 완료하고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2413호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 고시 제25호('89.11.25)로 실시계획인가된 고시사항중 관계인을 추가하여 별첨 고시(안)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2. 13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은평구 용암동 450의21-용암동 220의6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 용암동 450-220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도로개설 B=6m, L=200m, A=12a  
 라. 사업의 시행자: 은평구청장  
 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90. 12. 31  
 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성명: 별첨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별첨  
 아. 변경내용: 관계인 추가(3건)

●은평구고시제10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353호('89. 7. 21)로 시  
설결정되고 (서울)은평구 고시 제16호('89. 7.  
28)로 지적승인된 녹번동 81-131간 도로확  
장에 대한 도시 계획사업(도로)을 실시코자  
(서울)은평구 공고 제205호('89. 11. 7)로 공  
람공고 완료하고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  
조, 동법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2413  
호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 고시 제28호('89. 11.  
25)로 실시계획인가된 고시사항중 관계인을  
추가하여 별첨 고시(안)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2.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은평구 녹번동 165의12-  
137의18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  
녹번동 81-131간 도로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도로확장  
 $B=4-6m \rightarrow 8m, L=360m, A=36.8a$

라. 사업의 시행자: 은평구청장

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 '90. 12. 31

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별 첨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별 첨

아. 변경내용: 관계인 추가 (6건)

●은평구고시제11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353호('89. 7. 21)로

시설결정되고 (서울)은평구 고시 제16호('89.  
7. 28)로 지적승인된 불광동 267의1-230  
의22간 도로확장에 대한 도시 계획사업(도  
로)을 실시코자 (서울)은평구 공고 제209  
호('89. 11. 7)로 공람공고 완료하고 도시계획  
법 제25조 및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2413호의 규정에 의거 은  
평구 고시 제27호('89. 11. 25)로 실시계획인  
가된 고시사항중 관계인을 추가하여 별첨 고  
시(안)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2.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은평구 불광동 271의1-  
245의 17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  
불광동 267의1-230의22간 도로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도로확장

$B=3m \rightarrow 6m, L=210m, A=12.6a$

라. 사업의 시행자: 은평구청장

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 '90. 12. 31

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별 첨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별 첨

아. 변경내용: 관계인 추가 (16건)

●송파구고시제22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송파구고시제6호('89. 5. 22), 서울특별시고  
시 제226호('83. 3. 28)로 도시계획사업(도로)  
결정 및 송파구 고시 제6호('89. 5. 22), 서고  
시 제264호('88. 4. 13)로 지적고시된 문정서영  
아파트 전입로의 1개소 도로개설공사에 대

한 도시계획사업(도로)을 실시코자 송파구 공  
고 제14호('90. 2. 10)로 공람공고 완료하고, 도  
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  
조에 의거 본 사업을 인가하였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3.

송 파 구 청 장 인

가. 사업시행지

- 1) 거여동 58의1 - 산23의27호간
- 2) 종남동 268의9 - 269의 16호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

다. 사업의 규모: B=6-10m, L=360m

라. 사업이 시행자: 송파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로부터 2년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별첨

◎구로구고시제22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  
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 1. 사업명: 민영주택 건설사업
- 2. 사업주체: 삼우주택건설(주) 대표 서윤권
-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가. 위치: 구로구 궁동 170의 1필지
  - 나. 대지면적: 1,686평방미터
  - 다. 건축연면적: 1,988.64평방미터
  - 라. 규모: 연립주택 3층 2동 36세대
- 4. 사업시행기간: '90. 3 - '90. 12

1990. 3. 2

구 로 구 청 장 인

◎서초구고시제51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  
45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3. 3

서 초 구 청 장 인

-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사업
- 2. 사업자:
  - KBS리조트 주택조합의 2개조합
  - (주)우성건설리조트주택조합의  
26개조합
  - 대웅제약 제2리조트주택조합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가. 건설위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54-  
2의 38필지

나. 대지면적: 48,925.0㎡(14,799.81평)

- KBS: 7,835.0㎡(2,370.09평)
- 우성: 38,256.0㎡(11,572.44평)
- 대웅: 2,834.0㎡(857.28평)

다. 건축면적: 8,283.97㎡(2,505.90평)

- KBS: 1,492.46㎡(451.47평)
- 우성: 6,168.39㎡(1,865.94평)
- 대웅: 623.12㎡(188.49평)

라. 건축연면적: 102,375.015㎡(30,968.44평)

- KBS: 16,533.39㎡(5,001.35평)
- 우성: 79,857.71㎡(24,156.96평)
- 대웅: 5,983.915㎡(1,810.13평)

마. 건설규모: 아파트 지하1층-지상15층  
12동, 993세대

- KBS: 아파트 지하1층-지상14층, 1동, 149세대
- 우성: 아파트 지하1층-지상15층, 10동, 794세대
- 대웅: 아파트 지하1층-지상10층, 1동, 50세대

바. 사업시행기간: '89. 7. - '91. 4.

◎도봉구고시제119호

인영주택투기과열지구지정

주택투기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아파트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1990. .

도 봉 구 청 장 ①

- 1. 지정구역 : 도봉구쌍문동 167-1번지의 29필지
- 2. 대지면적 : 15,014.92㎡
- 3. 아파트명 : 쌍문 한양아파트
- 4. 규 모 : 아파트 10-17층 414세대 (26, 29, 32, 47, 50평형)
- 5. 사업주체 : (주)한양 대표이사 권기태

구 공 고

◎성동구공고제15호

도시계획사업(학교)완료공고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21('89. 3. 11)호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된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은실신축 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57조의2 및 같은법 제85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 합니다.
- 2. 관계 도서는 성동구청 도시경비과(전화 450-138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3. 2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성동구 화양동 4-1일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학교)

명 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은실 신축  
다. 사업시행규모

1)사업시행면적 : 478,233.3㎡(도시계획 결정면적)

2)사업내역 : 연면적 - 787.75㎡

라. 사업시행지주소 : 성동구 모전동 93-1호

성명 :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이사장 유승운  
다. 사임의학수 및 준공년월일

1) 착수년월일 : 1989. 3.

2) 준공년월일 : 1990. 3. 2

바. 공사 설계 도서 : 준공도면 별첨(생략)

◎동대문구공고제17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하수 30500-1-21호로 설치 인가한 다음 공공 하수도가 완료 되었기 하수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 하수도의 사용개시 공고 합니다.
- 2. 관계도면은 동대문구청 하수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5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

동 대 문 구 청 장

- 다 - 음 -

공공하수도설치내역 및 관계도면 (동대문구청 하수과 비치)

◎성북구공고제18호

도 시 계 획 안 공 고

- 1. 우리구 도시계획 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관련도서를 보입니다.
-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90. 2. 28-'90. 3. 13.(14일간)  
나. 공람장소 : 성북구청 도시경비과  
다. 관련도서 : 공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도면생략)

1990. 2. 28.

성 북 구 청 장

— 도 시 개 획 안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안)								
번호	구분	등급	유형	폭원 (m)	연장 (m)	시 점	종 점	비 고
1	신설	소로	3	6	70	성북구 종암동 30	성북구 종암동 30-6	
2	"	"	1-3	6-10	130	성북구 하월곡동 39-56	성북구 하월곡동 39-41	
3	기정	중로	3	8-16	500	성북구 정릉동 113-61	성북구 정릉동 45-111	
	변경	"	2	15	500	"	"	북악산길일부 구간전행변경

◎성북구공고제19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공람공고

1. 서울시 고시 제246호('76.9.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고시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시 고시 제565호('86.8.7)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되어 서울시 고시 제612호('86.8.29)로 지적고시후부, 성북구 공고 제2호('89.5.11)로 공람하고, 성북구 고시 제4호('89.6.8)로 실시계획인가되고 성북구 고시 제17호('89.9.22)로 변경인가된 정릉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추가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요져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람공고 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 건설관리자, 주택과에 비치하고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공람장소: 성북구청(토목과, 건설관리과, 주택과)

나.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990. 3.

성 북 구 청 장

1)사업시행자(추가): 정릉동 966-155~483-11

2)사업의종류 및 명칭: 변동없음

3)사업의규모(추가): 도로확장  
B=10m, L=140m

4)사업시행자: 성북구청장

5)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동없음

6)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7)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별첨

8)기타사항: 의견 및 기타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공고제2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1163호('64.10.26)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구간인 영등포구 신길동 91의 17- 92의 75간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을 실시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도로) 실시 계획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련연에 공람 공고 합니다.

2. 토지 및 건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는 개별 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 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로과 및 건설  
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2. 28.

영 등 포 구 청 장

- 공 람 개 요 -

가. 사업의시행지: 영등포구 신길동 91의  
17-92의 75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사 업 명: 신길동 91의17-92의75간  
도로 개설 공사

다. 사업규모: 도로개설 B=6m L=67m

라. 사업의 시행자: 영등포구, 장

마. 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91. 2. 28

바. 사용 또는 수용할 부지, 건물외소재지,  
지표, 지적, 소유자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경 약

◎구로구공고제24호

관 인 재 교 부









구로구 산하 동장의 관인을 구로구 관인  
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  
부 승인함을 동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90. 3.

구 로 구 청 장

1. 사용개시일자: 1990. 3. 20

2. 재교부 및 폐기판인

	신	규
인 영	 	 
공인명	구로제5동장인 및 계인 (민원사무전용)	독산제2동장인 및 계인 (민원사무전용)
인 영	 	 
공인명	시흥제4동장인 및 계인 (민원사무전용)	고척제2동장인 및 계인 (민원사무전용)

인 영	계 기	
		
공인명	구로제5동장인 및 계인 (민원사무전용)	독산제2동장인 및 계인 (민원사무전용)
인 영	계 기	
		
공인명	시흥제4동장인 및 계인 (민원사무전용)	고척제2동장인 및 계인 (민원사무전용)

●마포구공고제24호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  
일부 변경 공람 공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70호(’80. 7. 24)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된 아현제1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제44구획 일부에 대하여 관리 처분계획을 변경코자 도시재개발법 제41조제2항 규정에 의거 관리 처분 계획을 일부 변경 하고자 동법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공고 일로부터 30일간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동 공고 내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송달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동 공고로 갈음하고 변경 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인가시까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며
- 관계 도서는 마포구청 주택과 및 아현1동사무에서 공람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90. 3. 3

마 포 구 청 장

- 내 용 -

- 공람기간 : '90. 3. 5 - '90. 4. 3 (30일간)
  - 공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마포구청 주택과 및 아현1동사무소
- 다. 공람요지
- 명칭 : 아현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 위치 : 마포구 아현동 85번지 일대
  - 면적 : 138,860평방미터
  - 변경내역 : 위치-44구획 일부  
면적-312평방미터
  - 시행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은평구공고제35호

도시계획사업(공원)실시계획공람공고

- 서울특별시 고시 제50호(’90. 2. 28)로 조성 계획결정 및 지적승인된 신사 제4어린이

공원조성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공원)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2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90. 3. 6

은 평 구 청 장 ㉔

- 공 랑 개 요 -

가. 사업명 : 신사 제4어린이공원조성  
나. 위치 : 신사동 237-177  
다. 사업규모 : 공원조성 2,896㎡  
라. 사업의시행자 : 은평구청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90. 7. 31  
바. 사용 또는 수용일, 진용도서 : 별첨

◎도봉구공고제11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조치

다음 주택건설 사업자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조치하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0. 3.  
도 봉 구 청 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조치사항	조치사유	근거법규	비고
85-172	삼각주택(주)	봉기순의 1인	면동 437-2	영업정지 3개월	실적 미제출	주택건설 촉진법제7조	
87-188	천우주택	채규대의 1인	도봉구수유동 191-12	"	"	"	
87-185	화진가공(주)	박수만	도봉구도봉동 579-7	"	"	"	
89-136	유강기업(주)	박갑조	도봉구 창동 731-55	"	갑근세 미제출	"	
89-137	우광주택(주)	김중환	도봉구미아동 318-5	"	"	"	




**사업소공고**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고제3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폐기  
서울특별시조례 제2579호에 의한 적체개

편으로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직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함을  
동규칙 제11조에 의거 공고 합니다.

1990. 3. 10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 폐기일자 : 1990. 3. 7  
2. 폐기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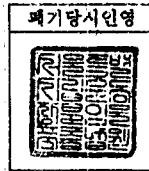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립 운동장 부인경리관	서울특별시립 운동장 부인지출원	서울특별시립 운동장 물품관리관



인	폐기 		
공인명	서울특별시립 분임 물품 출납원	서울특별시립 운동장 정수관	서울특별시립 운동장 수입 출납원
<p><u>직 인 폐 기 신 고 서</u></p>			
<p>회 계 명 <u>일 반 회 계</u></p> <p>관 서 명 <u>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u></p> <p>직 명 <u>서울특별시립 운동장 분임정리관</u></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부터</p> <p>사용기간 90년 3월 7일까지</p>			<p>폐기당시인영</p> 
<p><u>직 인 폐 기 신 고 서</u></p>			
<p>회 계 명 <u>일 반 회 계</u></p> <p>관 서 명 <u>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u></p> <p>직 명 <u>서울특별시립 운동장 분임지출원</u></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부터</p> <p>사용기간 90년 3월 7일까지</p>			<p>폐기당시인영</p> 
<p><u>직 인 폐 기 신 고 서</u></p>			
<p>회 계 명 <u>일 반 회 계</u></p> <p>관 서 명 <u>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u></p> <p>직 명 <u>서울특별시립 운동장 물품관리관</u></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부터</p> <p>사용기간 90년 3월 7일까지</p>			<p>폐기당시인영</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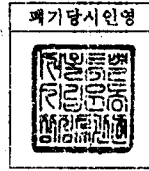
직 인 폐 기 신 고 서

회 계 명 일반 회 계  
 관 서 명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 명 서울특별시립운동장분임물품출납원  
 년 월 일부터  
 사용기간 90년 3월 7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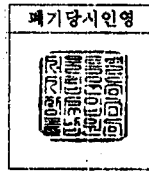
직 인 폐 기 신 고 서

회 계 명 일반 회 계  
 관 서 명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 명 서울특별시립운동장징수관인  
 년 월 일부터  
 사용기간 90년 3월 7일까지



직 인 폐 기 신 고 서

회 계 명 일반 회 계  
 관 서 명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 명 서울특별시립운동장수입금출납원  
 년 월 일부터  
 사용기간 90년 3월 7일까지



사 령

©1990년 3월 5일자

4급 공무원 면직

형 제27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조 인 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성 동 구	지방외무기정

◎1990년 3월 15일자		2, 9급 공무원 전출		령 제88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과두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전출을 명함.	강동구	지방행정서기		
장인회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1990년 3월 7일자		9급 기술직 공무원 전출		령 제89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경관	전라북도 전출을 명함.	동작구	지방토목기원보		

◎1990년 3월 8일자		5급 공무원 전보		령 제90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황병철	교통관리사업소 관리과장	자동차관리(사)	지방행정사무관		
손성호	성북구	교통관리(사)	"		
이은실	세정과 세외수입계장	성북구	"		
이원기	자동차관리사업소 등록과장	세정과	"		
박무근	청소년직업훈련원 총무과장	강서구	"		
최천주	강서구	건설자재시험소	"		

공무국의 여행 명령 통보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성동구	지방	이기재	일본	'90. 3. 8 - 3. 13 (6일간)	구비 (2,637불)	다저가와시와 지매결 연 8주년기념 행사 참 가
"	지방행정	김홍기	"	"	"	"
산업경제국 가스과	지방행정 사무관 주사보	김형득	"	'90. 3. 12 - 3. 17 (6일간)	초청자부담 (일본냉동공 조공업협회)	냉동공조 전시회 참관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 제도 연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인사

◎1990년 3월 1일자		기술직 공무원 면직 발령		령 제32호	
인비 번호	성명	제정		현직	
		부서	직위	부서	직위
1	정수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판당수원지 사무소	지방화공 기원

©1990년 3월 10일자		8급이하 월정직 공무원 유직 법령				령 제35호	
인 비 번호	성 명	제 정			현 직		
		부 서	직 위 (호봉)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1	김 희 영	지방공무원법 제63조1항1호 규정에 의하여 유직을 명함			강남수도 수도사업소		지방기업 행정서기보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